

# 공항현금휴대신고서

돈세탁 방지 및 테러리즘 자금지원 대응법 2009 제 68~71 항

## 뉴질랜드로 반입 또는 뉴질랜드에서 반출 또는 뉴질랜드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현금 수취

### 뉴질랜드 법에 따라 현금 휴대 신고서를 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세탁 방지 및 테러리즘 자금지원 대응법 2009(“해당법”)의 제 68~71 항에 의하면, 현금 이동(“현금 휴대 신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뉴질랜드로 현금을 가져오거나(동반으로 가져오는) 현금을 가져가는(동반으로 가져가는 혹은 비동반으로 보내는)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현금의 총 금액이 **NZ\$10,000 이상인** 경우(뉴질랜드 통화로 명명되지 않는 경우, 해당법의 제 7 항에 따라)
  - 해당법이나 규정에 따라 현금 이동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
- 뉴질랜드 밖에 있는 사람(본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뉴질랜드에서 비동반 현금을 받는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현금의 총 금액이 **NZ\$10,000 이상인** 경우(뉴질랜드 통화로 명명되지 않는 경우, 해당법의 제 7 항에 따라)
  - 해당법이나 규정에 따라 현금 이동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

### 현금 휴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A”)이 작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경우 누가 작성해야 합니까?

현금 휴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A”)이 작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경우(예를 들어, 소수인종이거나 장애로 인해), A 대신 행동을 하도록 승인을 받거나 A의 관리나 재산을 책임지는 다른 사람(“B”)이 A를 대신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현금 휴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개인이 직접 뉴질랜드로 가져오거나 혹은 뉴질랜드 밖으로 가져가는 동반 현금인 경우, 이민법 2009 의 제 103 조항(뉴질랜드에 도착하는 사람에게 적용)이나 제 119 항(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에게 적용)에 따라 해당 문서를 제출할 때 같이 세관 직원에게 현금 휴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뉴질랜드 밖으로 보내는 비동반 현금인 경우, 현금이 뉴질랜드를 떠나기 전에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밖에서 뉴질랜드로 보내는 비동반 현금인 경우, 현금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에(혹은 해당법의 제 109 조항 하에 현금이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 및 그 외 다른 핵심 용어의 뜻

해당법의 제 5 항에 따라 “현금”은 물리적인 통화나 소지자 양도 화폐(bearer-negotiable instruments, “BNI”) 혹은 둘 다를 포함합니다. 소지자 양도 화폐(“BNI”)는 해당법 제 5 항에 따라 다음을 포함합니다.

- 환어음
- 수표
- 약속어음
- 무기명 채권
- 여행자 수표
- 우편환이나 그와 비슷한 종류
- 해당법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그 외 다른 화폐

현금 휴대 신고서 에서 “개인”이란 법인, 공동소유법인 및 비법인 단체 등을 포함합니다.

## 위반, 처벌, 벌금 및 압류

### 위반

해당법 제 106-112 항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현금 이동과 관련하여 위반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 위반이 성립됩니다.

- 해당법의 제 106 혹은 107 항에 따라 합당한 이유 없이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혹은 뉴질랜드로 들어온 **NZ\$10,000 이상(혹은 그에 해당하는 외국환)**의 현금에 대하여 현금 휴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을 유도하지 않았으며, 해당법 제 109 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능한 한 빠른 법률 준수와 관련하여).
- 해당법의 제 110 항에 따라 합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잘못되었거나 오도하는 현금 휴대 신고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을 유도한 경우.
- 해당법의 제 111 항에 따라 합당한 이유 없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세관 직원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경우.

### 처벌

해당법의 제 112 항에 따라 이와 같은 위반을 한 개인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개인인 경우, 3 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0 이하의 벌금 혹은 양쪽 모두.
- 공동소유법인인 경우 \$50,000 이하의 벌금.

### 벌금 및 압류

잘못되었거나 오도하는 현금 휴대 신고서 혹은 비신고는 해당법의 위반인 경우, 세관 및 소비세법 2018 에 따라 금지된 수입이나 수출에 해당하므로, 벌금 및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TRID.

POLICE REF NO.:

대문자 영어로 적어 주세요

**PART A 신고서("A") 작성 의무자 세부 정보**1. 귀하는 (아래의 사유로 본 신고서 ("A")를 할 사람입니다.): *(적절한 박스에 체크하십시오)*

- 뉴질랜드로 NZ\$10,000 또는 이상의 (또는 상응하는 외화) 현금을 반입
- 뉴질랜드에서 NZ\$10,000 또는 이상의 (또는 상응하는 외화) 현금을 반출
- 뉴질랜드 외 지역에서 NZ\$10,000 또는 이상의 (또는 상응하는 외화) 현금을 수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ART B A 와 관련된 기타 세부 정보** *(적절한 항목을 기입하십시오)*

2. 항공편 번호: 선박명: 기타:

3. 여권번호:

4. 국적:

5. 성씨(성):

6. 이름:

7. 생년월일: (일) (월) (년) 남성  여성 

8. 직업:

9. 도착지 또는 출발지:

10. 도착일 또는 출발일:

11. A 의 주거 또는 사업상 뉴질랜드 또는 해외의 영구실제주소(사서함 아님):

우편번호:

국명:  
*(뉴질랜드가 아닐 경우)*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12. 뉴질랜드 거주여부: 예  아니오 

13. 뉴질랜드 거주가 아닐 경우 뉴질랜드 체류시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PART C 뉴질랜드로 반입 또는 뉴질랜드에서 반출 또는 뉴질랜드 외 지역에서 수취한 현금(실제통화)의 세부 정보** *(실제통화가 아닐 경우 Part D 로 가시오)*

통화 종류 <i>(예: 뉴질랜드 dollar, 영국 £, 일본 yen)</i>	통화 금액	근사치 환율	뉴질랜드 달러 환산 가치
뉴질랜드 달러 환산 현금 총계			

14. 현금이 이동된 또는 이동될 해외 국가, 지역  
국명: 지역:

15. 자금 원:

16. 자금 용도 (현금을 무엇을 쓸것인지):

17. 소지자 양도 화폐(BNIs)를 옮기는 중이었나요? 예  *(Part D 로 가시오)*  
아니오  *(Part E 로 가시오)*  
*( "BNI"의 뜻은, 본 서류 1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ART D 뉴질랜드로 반입 또는 뉴질랜드에서 반출 또는 뉴질랜드 외 지역에서 수취한 소지자 양도 화폐(BNI)의 세부 정보**

BNI 1 종류	BNI 2 종류
환어음 <input type="checkbox"/>	환어음 <input type="checkbox"/>
수표 <input type="checkbox"/>	수표 <input type="checkbox"/>
약속어음 <input type="checkbox"/>	약속어음 <input type="checkbox"/>
무기명 채권 <input type="checkbox"/>	무기명 채권 <input type="checkbox"/>
여행자 수표 <input type="checkbox"/>	여행자 수표 <input type="checkbox"/>
우편환 또는 유사 화폐 <input type="checkbox"/>	우편환 또는 유사 화폐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_____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_____ <input type="checkbox"/>
화폐 종류:	화폐 종류:
BNI의 총 가치:	BNI의 총 가치:
발행인 또는 수표발행인:	발행인 또는 수표발행인:
수취인 또는 수령인:	수취인 또는 수령인:
시:	시:
국명:	국명:
자금 원:	자금 원:
자금 용도:	자금 용도:
BNI가 이동된 또는 이동될 해외 국가, 지역:	BNI가 이동된 또는 이동될 해외 국가, 지역:
<i>(BNI가 2 종류 이상일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입해 첨부 하십시오)</i>	

**PART E A는 A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현금을 이동했나요?**

예  (Part H 로 가시오)      아니오  (Part F 로 가시오)

**PART F A의 행동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건가요?**

18. A의 행동으로 이익을 얻게되는 사람의 이름(예, 사업상 또는 조직내)은 무엇인가요?

19. 그 사람의 주거 또는 사업상 뉴질랜드 또는 해외의 영구실제주소(사서함 아님):

국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20. 그 사람의 직업, 사업체 또는 주요활동:  
(한 사람 이상일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입해 첨부 하십시오)

**PART G A의 것이 아니라면, A는 누구에게 현금을 이동하는 것인가요?**

21. 현금을 이동 받는 사람의 이름(예, 사업상 또는 조직내)은 무엇인가요?

22. 그 사람의 주거 또는 사업상 뉴질랜드 또는 해외의 영구실제주소(사서함 아님):

국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23. 그 사람의 직업, 사업체 또는 주요활동:  
(한 사람 이상일 경우, 별도의 용지에 기입해 첨부 하십시오)

**PART H 신고서 작성인 (A 또는 B)의 신고 및 서명**

24. 본 신고서의 내용은 사실임을 신고합니다.

서명:.....

날짜:

(일) (월) (년)

25. 본인("A")이 기입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경우 대행("B")으로 기입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입하십시오:

B의 성명:

B의 직업:

26. B의 주거 또는 사업상 뉴질랜드 또는 해외의 영구실제주소(사서함 아님):

국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27. B가 A를 대신해 신고서를 작성한 이유 (예, A의 연령, 장애 또는 기타 신고서 작성 장애 요인):

28. A를 대신해 신고서를 작성한 B의 지위 (예, 대리인, 변호사, 직원, 보호자, 부모, 재산관리인):

### 작성한 현금 휴대 신고서의 사용 및 그에 대한 접근성

현금 휴대 신고서를 제출받은 세관 직원은 해당법 제 71(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그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법의 제 139 항에 따라 뉴질랜드 세관은 해당법에 따라 확보한 정보(개인 정보가 아닌 경우)를 법률 집행 목적(해당법의 제 5 항)을 위해서 정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해당 정부 기관은 그와 같은 정보를 받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 휴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이나 타인이 대신 작성해준 사람은 Commissioner of Police, Police National Headquarters,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PO Box 3017, Wellington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관 용

#### CUSTOMS USE ONLY

Name, date of birth and passport verified:	Yes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Voluntary Disclosure:	Yes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Physical Currency Value Verified:	Yes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BNI Value Verified	Yes <input type="checkbox"/>	.....	No <input type="checkbox"/>
Officer:			
Port:			
CusMod Report No:			
Date of Report:	(Day)	(Month)	(Year)
<b>Forward completed report to:</b> Commissioner of Police, Police National Headquarters,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PO Box 3017, Wellington			